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나목(7) 중 "바"를 "사"로 하고, 같은 표 제4호가목(1)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	상	중	ठॅो-
상향조정사유 발생	100분의 3	100분의 2.55	100분의 2.1
해당사항 없음	100분의 2.55	100분의 2.1	100분의 1.65
하향조정사유 발생	100분의 2.1	100분의 1.65	100분의 1.2

별표 2 제4호가목(2)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	상	중	ठॅं}
상향조정 사유 발생	100분의 10	100분의 8.5	100분의 7
해당사항 없음	100분의 8.5	100분의 7	100분의 5.5
하향조정 사유 발생	100분의 7	100분의 5.5	100분의 4

별표 2 제4호가목(3)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	상	중	ठो
상향조정사유 발생	10,000분의 1	10,000분의 0.85	10,000분의 0.7
해당사항 없음	10,000분의 0.85	10,000분의 0.7	10,000분의 0.55
하향조정사유 발생	10,000분의 0.7	10,000분의 0.55	10,000분의 0.4

별표 2 제4호가목(4)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	상	중	ठॅ}
상향조정사유 발생	10,000분의 2	10,000분의 1.7	10,000분의 1.4
해당사항 없음	10,000분의 1.7	10,000분의 1.4	10,000분의 1.1
하향조정사유 발생	10,000분의 1.4	10,000분의 1.1	10,000분의 0.8

별표 2 제4호가목(5)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	상	중	ठॅरे
상향조정사유 발생	100분의 200	100분의 180	100분의 160
해당사항 없음	100분의 160	100분의 140	100분의 120
하향조정사유 발생	100분의 140	100분의 120	100분의 100

별표 2 제4호가목(6)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	상	중	ठॅरे
상향조정사유 발생	100분의 150	100분의 137.5	100분의 125
해당사항 없음	100분의 137.5	100분의 125	100분의 112.5
하향조정사유 발생	100분의 125	100분의 112.5	100분의 100

별표 2 제4호가목(7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	상	중	하
상향조정사유 발생	100분의 100	100분의 60	100분의 40
해당사항 없음	100분의 60	100분의 40	100분의 30
하향조정사유 발생	100분의 40	100분의 30	100분의 20

^{*} 단, "법 제174조, 제176조, 제178조 및 제178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우" 또는 "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위반 여부 판단을 중대하게 저해한 경우"에는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관계없이 부과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적용

별표 2 제4호나목 (2)(가) 중 "V등급으로 한다.)"를 "'하'로 분류한다.)" 로 한다.

별표 2 제4호다목의 감안사유 판단기준 중 상향조정사유의 조정기준란 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추가한다.

구 분	조 정 기 준
상향 조정 사유	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,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거나 법 제429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・제429조 제1항제1호, 제2항제1호, 제3항제1호, 제4항제2호, 제5항제1호의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(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한다)

별표 2 제7호 라목의 표를 다음와 같이 한다.

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	상	중	하
상향조정 사유 발생	100%	85%	70%
해당사항 없음	85%	70%	55%
하향조정 사유 발생	70%	55%	40%

별표 2의2 제1호 중 "제39의5호"를 "제39의5호·제39의6호·제39의7호" 로 한다.

별표 2의4 제목 "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·재임 제한명령 기준"을 "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·재임 제한명령 부과기준"으로 하

고, 별표 2의4 제3호가목을 삭제하며,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, 같은 표 제4호다목 상향조정사유의 조정기준란 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추가한다.

구 분	조 정 기 준
상향 조정 사유	•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,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거나 법 제429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

별표 4 제1호 중 "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」제58조"를 "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」제55조의2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